

서울특별시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711
----------	-----

2000년 11월 일  
보건사회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0년 10월 20일,  
서울특별시청 제출
- 나. 회부일자 : 2000년 10월 23일
- 다. 상정일자 : 제123회 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제2차 보건사회위원회(2000년  
11월 9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보건복지국장 정규태)

가. 제정이유

사회복지시설 관련조례를 「서울특별시립  
공공시설 설치·운영 관련 조례 정비계획」(시 방침 600호, 6.12)에 따라 유형별  
로 특성에 맞는 조례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공통적인 사항과  
그 특성에 맞는 내용을 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1) 적용대상 시설을 정함 : 총 39개 시설(안  
제3조 및 별표)
  - 종합사회복지관 : 시립신복종합사회복지  
관 1개소
  - 장애인복지 관련 시설 : 시립서울장애인  
종합복지관 등  
8개 시설
  - 노인복지 관련 시설 : 시립노인요양원  
등 23개 시설
  - 부랑인보호 관련 시설 : 은평의 마을 등  
2개 시설
  - 아동·부녀복지 관련시설 : 아동상담소  
등 5개 시설
- (2) 이용자 자격을 정함(안 제5조)
  - 부랑인 보호시설(영보자애원, 은평의마을) :  
시 행정구역안에서 발견된 부랑인
  - 부랑인 보호시설 이외의 시설
    -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사  
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자
    - ※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자 : 사회복지  
지사업법 제2조제1항 각호의 1의 법률  
에 의하여 보호 등을 받는 대상자를

말한다.

- (3) 사회복지시설을 민간에 위탁하여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고 민  
간위탁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은 서울특  
별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를 준  
용하도록 하되, 위탁기간 종료 시 등에 대  
한 시설물의 원상회복 등에 관한 조치사  
항을 정함.(제6조 내지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안석수)

가. 개요

- 서울특별시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  
조례안은 서울특별시공공시설설치조례와 서  
울특별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던 사회복지시설 관련  
조례를 단일 조례로 별도 제정하여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 관련시설, 노  
인복지 관련시설, 부랑인보호 관련시설,  
아동·부녀복지 관련시설 등 총 39개 적  
용대상 시설을 규정하고,  
-부랑인 보호시설과 부랑인 보호시설 이외  
의 시설에 대한 이용자 자격을 정하며,  
-사회복지시설을 민간에 위탁하여 관리·운  
영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하는 것임.
  - 서울특별시의 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한 모든  
시설과 시설관리운영위탁 사항은 '98. 4. 30  
제정된 서울특별시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  
위탁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운영되어 왔으  
나, 통합조례로서는 시설 유형별 특성에  
맞는 내용을 규정할 수 없어 시설 유형별  
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중이며,  
우리 위원회 소관중 여성발전센터는 2000.  
7. 25 제정된 서울특별시여성발전센터설치  
및운영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음.
  - 그 일환으로 서울특별시사회복지시설설치  
및운영에관한조례를 단일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사회복지시설관리 및 위탁 등 시설운  
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별도 문  
제가 없다고 생각됨.
- 나. 안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사회복  
지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서울특별시보 또는 일간신문 등의 홍보매  
체를 이용하여 공고하도록 한 것은  
-이미 수탁자가 확정되었기에 또한 예산상

의 이유로 서울특별시보에만 게재하더라도 별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나, 가급적이면 행정의 투명성 확립차원에서 서울특별시보 뿐만 아니라 이외의 홍보매체를 반드시 이용하는 것도 고려함이 좋겠다고 생각됨.

다.안 제7조(수탁자 선정)

○ 시장은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운영의 효율성 및 사회복지시설의 특성을 감안하여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 제6조 내지 제16조의 규정 이외에 수탁자 선정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 -수탁하고자 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행정의 투명성이나 신뢰성 제고 차원에서 제반 수탁자 선정기준을 조례에 명시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라.기 타

○ 이외에 서울 이외의 지역에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그 지역 주민에 대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일부 혐오 시설로 비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원만한 운영을 기하는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겠으며, 시설의 위탁기간 종료 또는 취소 시 원상회복 등의 필요한 조치를 규정한 안 제8조(시설관리 등)등에 대하여도 별도 이견이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미구성

7. 심사결과

원안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사회복지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712
----------	-----

2000년 11월 일  
보건사회위원회

1. 심사경과

가.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0년 10월 20일,  
서울특별시장 제출

나.회부일자 : 2000년 10월 23일

다.상정일자 : 제123회 서울특별시의회의회  
제2차 보건사회위원회(2000년  
11월 9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보건복지국장 정규태)

가.개정이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2000. 10. 1)에 따라 시·도 단위로 구성·운영하도록 되어 있는「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나.주요골자

(1)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 내용에 맞도록 제명을 변경함(안 제명)

제명 : 사회복지심의위원회설치조례 → 사회복지위원회조례

(2)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두어야 하는 생활보장위원회 기능을 동 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함.(안 제3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기능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음(법 제20조제1항)

(3)당연직 위원에 아동 및 여성보호를 관장하는 여성정책관을 추가하고, 민간참여 제고를 위하여 위원장이 행정(1)부시장 1인 이던 것을 민간인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장을 추가하여 공동위원장 제도를 도입하고, 부위원장도 보건복지국장 1인에서 여성정책관을 추가하여 2인으로 하도록 함.(안 제 4조)

(4)위원회 개최요구권 등을 조정함.안 제7조)

○ 정기회 개최시기 : 매분기 1회 → 매년 1회

○ 임시회 개최 요구권 요건 추가 : 총 위